

2019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 1. 11.(금) 15:30~16:30

□ 장 소 : 대학본부 3층 307호

□ 참석위원 : 6명

- 교원위원(3명) : 교학부총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예산처장
- 학생위원(3명) : 부총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 배석 : 3명 (기획예산과 담당자 1명, 교무과 담당자 2명)

□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2019학년도 등록금 계열 구분(안)
- 인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금(안)

□ 심의결과

- **인천대학교 2019학년도 등록금 계열 구분(안) : 원안의결**
 - 소비자아동학과 2~4학년(2018학년도 입학생까지) : 이학·체육계열 등록금
 - 소비자학과 1학년(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 **인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금(안) : 심의보류**

□ 회의내용

▶ 직원

성원 보고(재적위원 총 7명 중 참석위원 6명, 불참위원 1명)

▶ 교학부총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2019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개로 첫 번째는 '2019학년도 등록금 계열 구분(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두 번째는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 직원(기획예산과)

'2019학년도 등록금 계열 구분(안)' 안건 설명(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록금(안))

등록금(안)	소비자아동학과 2~4학년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 : 이학체육계열 등록금 적용 소비자학과 1학년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적용
---------------	--

▶ 부총학생회장

만약 현재 2학년 소비자아동학과 학생이 군대를 가고 개인 사유로 휴학한 뒤 복학 하면 그 시기에는 소비자학과 학생밖에 없을 텐데, 이 친구는 소비자아동학과로 졸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학과 교수님이 최대한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별도의 공식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 친구는 계속 이학체육계열 등록금을 내야 할 텐데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을 조항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처장

원래 소비자아동학과가 소비자학과로 변경할 때 전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몇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합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도 해당 학생회와 다 논의하여 합의된 걸로 알고 있고, 이를 본부에서 따로 지침을 세우기보다는 합의 된 것을 인정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교학부총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2019학년도 등록금 계열 구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안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금(안)을 심의하겠습니다.

▶ 직원(교무과)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안)' 안건 설명(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록금(안), 추진경과, 향후 계획)

등록금(안)	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취득 미희망자 등록금 : 등록금 납부금액의 7%
---------------	---

미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에 대해 말씀드릴 때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등록금이 필요 한가라고 하셨는데 우리학교에 수료 제도도 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싶고, 수료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수료 제도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수료생은 학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직원(교무과)

예.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등이 있고, 수료생은 일반인처럼 새로 등록을 해야 하고, 기숙사나 장학금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수료상태는 학적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부총학생회장

유예 학생도 기숙사 이용은 할 수 있습니까?

▶직원(교무과)

일단 유예 학생은 재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용대상자는 되는데 기숙사에 학년 별로 인원 편성이 다 되어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고 기숙사 인원 편성 시 유예 학생에 대한 배정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학생회장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등록금만 하는 것인가요, 학칙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인가요?

▶직원

이 자리는 등록금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학칙 관련해서도 필요한 의견을 주시면 규정 개정 단계에 있으니까 참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

학칙 개정안이 나오면 의견조회를 합니다. 학생과 관련된 것은 총학생회로 가고요, 그 때 의견을 주시면 교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합니다.

▶부총학생회장

저희는 아직 의견조회를 못 받았고 지금 처음 들어서 추후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직원

의견조회는 다 끝났지만 교육연구위원회, 평의원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그 전에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시행일을 2019년 3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2월 졸업생부터 가능하게 하려고 추진해왔는데, 당장 시행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8월 졸업생부터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생·취업처장

시행세칙 12조에 적용되는 대상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직원

학점별 등록금은 8학기 초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을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는데 안 들을 때는 등록금의 7%정도를 납부하는 것이 이번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처장

전에 듣기로는 지방 몇 개 대학은 학생회에서 오히려 이 제도를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은 안 들으면서 도서관만 이용하는 학생들로 인해 타 학생들이 시설 이용 등에 불만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최소한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1,000석밖에 안되는데 학생이 만 명이 넘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육지책에서 이번 안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학생·취업처장님과 얘기했었는데, 학교 시설 이용이 주된 이유라면 계열별로 등록금이 다른데 왜 7%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가 가고 정액제로 갈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하되 등록금을 두는 것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학생회장

저희는 이 등록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가란 생각을 하고, 혹 부담하더라도 각 계열별로 %를 적용해서 학생마다 등록금이 달라지는 게 시설 이용료라고 할 수 있는 가란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직원(교무과)

단순 시설 이용료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학 신분을 유지하면서 시설 이용 뿐 아니라 학사 관리 제반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그렇다면 좀 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이 단순히 타 대학과 비교해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것이고 비율제로 가는 것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교학부총장

신분이 재학생으로 되면 공시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처장

일단 수료를 하면 우리학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원(교무과)

유예 제도를 하면 신분은 재학생이지만, 통계에서는 재학생이 아닙니다.

원래는 통계에서도 재학생에 포함되어 교원 확보율 등 통계지표 하락에 영향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이 학점등록을 의무화 했는데,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말고 유예학생은 통계의 재학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생·취업처장

비율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200만원의 7%면 약 14만원인데, 계열별로 정확히 보면 14만원에 인문사회계열은 3,500원, 이학체육계열은 2만 1천원, 공학예술계열은 4만 2천원

을 더 냅니다. 이렇게 보면 공학예술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건데요, 아까 기획예산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여부는 저도 좀 알아봤을 때 등록금을 안 받는 대학도 있지만, 그럴 경우 실제 재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고, 학생회에서 그 우려까지 완전히 감수하겠다 하면 등록금은 안 받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학부총장

법상 재학생으로 보지 않으면 대학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유예제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원확보율이 학생 당 교원 수로 보는데 공시지표의 값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 부총학생회장

저희가 유예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제도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등록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처장

고민 해봐야 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업은 안 듣지만,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상승과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은 등록금을 책정하는 데도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내게 된다면 비용분담이 나머지 12,000명 학우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지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학생들이 교무과 등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인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대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부총학생회장

혹시 이번학기 수료생 수를 알 수 있을까요?

▶ 교무과

대략 졸업대상자의 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 졸업대상자가 3천 5백 명 정도라고 보면 졸업자는 2천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 45%~50%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 학생·취업처장

그럼 졸업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1천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아까 조건만 맞으면 등록금은 안 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만약 1천명이 남아서 학교 시설물과 열람실을 이용하면 그게 다른 재학생들에게 영향이 충분히 클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그저 안 내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기획예산처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등록금은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전제를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대신 금액은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요.

▶ 교학부총장

정액제를 하는 것이 7%로 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금액은 정회를 하고 고민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 교학부총장

속회하겠습니다.

앞서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셨고 등록금의 7%로 하는 것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있으니 가급적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등록금의 7%면 14만원에서 18만 원 정도인데요,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총학생회장

저희가 이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안)'에 대해서 어제 알았고 하루 동안 나름 알아봤는데, 총학생회장과 얘기해본 결과 지금 당장 결정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총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논의한 것을 토대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논의를 하고 결정한 뒤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 교학부총장

그럼 실무부서에서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직원(교무과)

다음 주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학생·취업처장

저희가 만약 다음 주에 결정하면 2019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 직원

예. 불가능합니다.

▶ 학생취업처장

그럼 시간이 많이 있는 거네요?

▶ 직원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빨리 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택하는 제도에 맞게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도 계획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처장

다음 주 월요일 총운영위원회면, 화요일, 수요일 어떤가요?

▶ 부총학생회장

예. 괜찮습니다.

▶ 교학부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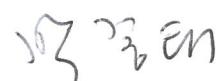
그럼 두 번째 안건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금(안)은 보류를 선언합니다.

다음 등록금심의위원회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19.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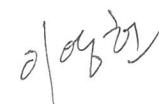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위 원 박 종 태 

위 원 최 병 조 

위 원 허 진 

위 원 최 동 혁 

위 원 이 영 헌 

위 원 고 경 남 

위 원 허 인 수